##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(제44조제2항 관련)

위반행위	과징금 금액
1.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	위반 횟수마다 제조업
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·대여·배포, 시청·	자 1,000만원, 유통관
관람·이용에 제공한 경우	런업자 100만원
2.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	위반 횟수마다 1,000만
을 유통하게 한 경우	원
3.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	위반 횟수마다 주류판
4호가목1)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)의 담배를 판매한	매자 100만원, 담배판
경우	매자 100만원
4.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	위반 횟수마다 100만원
4호가목4)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)의 약물 또는	
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·대여·배포한 경우	
5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	1명 1회 고용마다
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	1,000만원
고용한 경우	
6.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1)	1명 1회 고용마다 500
·2)·4)·5)·6)·7)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	만원
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	
경우	
7.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	출입허용 횟수마다 300
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	만원
8.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	위반 횟수마다 300만원
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	
9.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	위반 횟수마다 300만원
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	
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	
한 경우	
10.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	위반 횟수마다 1,000만
·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	원
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	
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	